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김기덕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278)】

- 가. 발 의 자 : 김기덕 의원(찬성자 12명)
- 나. 발의일자 : 2023년 10월 9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김원중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294)】

- 가. 발 의 자 : 김원중 의원(찬성자 24명)
- 나.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1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김기덕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278)】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치구, 박물관 및 미술관, 기타 법인·단체 등의 협력을 위해 시장의 예산 수립 및 확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 또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 제출의 보고를 명시하는 조항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 등 미흡한 내용을 정비함.

나. 주요 내용

- 시장의 예산 수립 및 확보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 별도 신설하고자 기존 규정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
-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신설함(안 제7조의2).
-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세부적 회의 사항에 대해 명시함(안 제8조).
- 인용 법령, 조문 정비 등 미흡한 내용을 정비함(안 제3조의2, 안 제6조).

【김원중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1294)】

가. 제안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제2조의2, 제5조의3에서 제5조의5까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또한, 조례 제정 이후 개정되지 못한 위원회 관련 조항을 현행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일치시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

나. 주요 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함(안 제3조의2).
-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박물관 분과 및 미술관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회의 일정 및 안전에 대한 내용을 수정함(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덕 의원, 김원중 의원으로 총 2건의 안건이 각각 발의되었음
- 김기덕 의원 (안)과 김원중 의원 (안)에 대한 개정사항은 다음 표와 같음.

<의원발의안 개정사항>

구분	김기덕(안)	김원중(안)
안 제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시책 강구와 예산 조치	박물관 및 미술관 시책 마련
안 제3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의2	자료제출	-
안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위원회 구성	위원해촉 규정
안 제7조의2	위원장의 직무	-
안 제8조	회의일시, 장소, 안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일정과 안전 통보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 김기덕·김원중 의원 (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3.6.20.개정) 개정에 따라 조 제목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 를 포함하고 있음.

현 행	김기덕(안)	김원중(안)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육성 을 위한 노력 등) ① 서울특 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 <u>확충 및 지원·육성 등</u> <u>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u> <u>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u> <u>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u> <u>상의 조치를 하도록</u>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 <u>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u> <u>시설로서의 지원·육성 등</u> <u>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u> <u>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u> <u>록</u> -----.
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 능에 맞는 설립·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 여야 한다.	②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②·③ (현행 제3항 및 제 4항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이는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해 시설 확충과 지원·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문화시설 설립·운영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책 마련’ 이라는 중복 규정인 제2항은 삭제할 것을 제안함.

< 안 제3조의 수정의견 >

현 행	수정의견
<p>제3조(박물관·미술관의 육성을 위한 노력 등)</p> <p>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는 설립·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u>확충 및 지원·육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u> -----.</p> <p>② <삭 제></p> <p>②·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안 제3조의2)

- 김기덕·김원중 의원 (안)은 개정된 법령 등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 “진흥계획” 을 “시행계획” 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김기덕(안)	김원중(안)
<p>제3조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수립) ----- 법 제5조의3----- ----- 시행계획----- -----.</p>	<p>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행계획 수립) ----- 법제5조의3-----서울특별시에 위치한 ----- 시행계획----- -----.</p>

< 안 제3조의2의 수정의견 >

현 행	수정의견
제3조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u>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u>계획</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행계획 수립) ----- <u>법제5조의3</u> ----- <u>서울특별시</u> <u>시에 위치한</u> ----- <u>시행계획</u> ----- -----.

(3) 자료제출 (안 제5조의2)

- 김기덕 의원 (안)은 서울시로부터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신설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운영 경비나 사업비 집행과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재원별로 실적 보고와 외부감사 보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와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들어간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안 제6조)

- 김기덕 의원 (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로 조 제목을 변경였으며, 김원중 의원 (안)은 분야를 분과로 자구 수정과 함께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신설하고 있음.

현 행	김기덕(안)	김원중(안)
<p>제6조(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p> <p>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u>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시장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박물관 분야 및 미술관 분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신설></p>	<p>제6조(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u>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p>	<p>제6조(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분과</u> 및 -----<u>분과</u>로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 조 제목은 조례명과 같이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변경하는데 공감하나, 분야를 분과로 수정하는 데 대해 관련 법령에서는 ‘박물관·미술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로 규정되어 있음.

- 김원중 의원 (안)의 경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는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 위해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나, 현재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별도 구체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어려움.
- 또한, 개정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고 있는 바, 안 제6조제3항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중 심의·의결 사항은 법 제정 조항과 일치하도록 반영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을 제안함.

< 안 제6조의 수정의견 >

현 행	수 정 의 견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의 지원사업 및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의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법 제29조의 그 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조의2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4조에 따른 경비 보조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및 법 제29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위원회 구성(안 제7조)

- 김기덕 의원 (안)은 위원회의 구성으로 위원장의 회의 총괄 직무를 별도 신설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김원중 의원 (안)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신설 규정을 담고 있음.

현 행	김기덕(안)	김원중(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 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u><신 설></u>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호선한다. -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 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 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안 제7조의 수정의견 >

현 행	수 정 의 견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 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u><신 설></u>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호선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 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6) 위원장의 직무(안 제7조의2)

- 김기덕 의원 (안)은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대행자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현 행	김기덕(안)	김원중(안)
<신 설>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 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위원회 운영(안 제8조)

- 김기덕 의원 (안)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7일 전' 을 '15일 전' 으로 변경하고 긴급으로 개최 되는 회의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김기덕(안)	김원중(안)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시장 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회의 7일 전 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 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 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 개최 15일 전까지 회 의 일정과 안건 등 ----통 보하여야 ----. -----사 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 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 된 사항 등은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운영) ① ----- -----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 ② (현행과 같음)

-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와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안 제8조의 수정의견 >

현 행	수 정 의 견
<p>제8조(위원회 운영) ① 시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u>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u> 다만, 긴급한 <u>경우에는</u>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생략)</p>	<p>제8조(위원회 운영) ① ----- ----- <u>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통보하여야 ---.</u> ----- -<u>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u></p> <p>② (현행과 같음)</p>

의안번호
1278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기덕 의원	'23.10.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 및 입법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및 미술관, 기타 단체 등의 협력을 위해 시장 예산수립 확보에 대한 시장 책무를 규정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자료 제출 보고 의무를 명시, 기타 인용 법령 및 조문 정비 가. 시장의 예산수립 및 확보를 위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의2) 다.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 시 자료 제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의2) 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해 별도 신설하고자 기존 규정 내용을 삭제함 (안 제7조) 				
추진경과	○ '23.10.9.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사항('23.6.20.)을 반영하고, ○ 예산 수립 및 확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경비 지원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등 미흡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기게 동의함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노은영(☎2133-4183)	담당	강주연(☎2133-4186)

의안번호
1294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원중 의원	'23.10.11.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 및 입법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함 <p>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3조제1항)</p> <p>나.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수정 (안 제3조2)</p> <p>다.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안전심사를 위해 박물관 분과 및 미술관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회의 일정 및 안전에 대한 내용을 수정(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p>		
추진경과	○ '23.10.11.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조례에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는 비상설 위원회로서 회의 종료와 동시에 위원을 해촉하게 되어 있으나, ○ 개정 조례안 제7조 4항의 신설에 따라 위촉 후 회의 시작 전에도 해촉할 수 있게 됨. 회의 시작 전 위원 해촉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촉 가능토록 한 규정이기에 동 조례안 개정예 동의함 		
대응방안			
상 임 위 처리결과			
향후계획			
담당부서	박물관과	팀장 노은영(☎2133-4183)	담당 강주연(☎2133-4186)